합 의 서

20 년 월 일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亡_____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유족 대표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.

1. 사고 내용

사고일시		사고장소	
가 해 자		가해차량	
피 해 자		주민번호	

2. 합의내용

합의금액	金 원 (₩)
합의사항	가. 위 합의금은 이 사건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유족 대표에게 가해자 개인이 지급하는 돈이다. 나. 피해자 유족들은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.
채권양도	가. 만일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위 합의금의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그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(또는 보험금 청구권)을 피해자유족대표에게 양도한다. 나.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차량의 **보험회사인_____에** 채권양도통지를 한다. 다. 이 합의로써 채권양도되었기에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못한다. 라. 만일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보상금액에서 공제된 합의금 액수만큼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.

3. 기타사항

가.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에서 1부씩 보관한다.

나. 이 합의서와 관련한 채권양도통지를 가해자가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보험회사에 발송한 후 내용증명 원본을 피해자유족대표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이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.(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무효로 한다.)

4. 첨부서류

가. 피해자의 주민등록말소자등본 (또는 제적등본) 1부
나. 피해자 유족들의 주민등록등본 (또는 호적등본) 각 1부
다.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대표의 인감증명서(합의용) 각 1부
(* 이 합의서를 공증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불필요 : 가능하면 공증하는 것이 더 좋음)

20 년 월 일

가해자		피해자 유족대표(망인의_____)	
성 명	(인)	성 명	(인)
주 소		주 소	
주민번호		주민번호	

채권양도 통지서

통지인(이 사건의 가해차량 운전자)		피통지인(가해차량의 보험회사)	
주 소		주 소	
성 명	(인)	회 사 명	

통지인은 피통지인에게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 통지합니다.

1. 교통사고 내용

사고일시		사고장소	
가 해 자		가해차량	
피 해 자	(亡)	주민번호	

2. 양도채권의 내용

합의금액	金 원 (₩)
채권양도	가. 통지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유족대표(亡人의_____)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했습니다. 나. 만일 위 금액의 일부가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(또는 보험금청구권)을 합의서 작성할 때 피해자유족대표에게 채권양도 하였습니다

3. 요망사항

가. 통지인은 이미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(또는 보험금청구권)을 피해자유족대표 에게 채권양도 했기에 그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.

나. 만일 피해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에서 위 합의금의 일부라도 공제되면 결국 피해자 유족들이 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(또는 보험금청구권)을 행사하여 이중으로 소송하게 되어 불편할 것이니 보상처리 시 위 합의금에 대한 공제주장을 하지 마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.

4. 첨부서류

가. 형사합의서 사본 1부

20 년 월 일

통지인 (인)

우편번호 :

주 소 :

_____보험주식회사

대표이사_____귀중